

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6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김영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이상욱, 장태용, 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「청년기본법」 제·개정에 따른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명시하고, 청년자율예산 운영 상의 회계원칙과 예산편성절차 등을 확립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로 ‘정책결정과정’을 추가 규정하여 실질적인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함 (안 제1조)
- 나. ‘예산·회계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’에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(안 제5조)
- 다. 시장예산편성권, 의회 예산안 심의권 등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 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청년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6조와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”을 “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과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을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청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정한다”를 “정하며, 회의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「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」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과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청년자율예산의 범위)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5조(청년자율예산의 범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청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
<p>제12조(총회) ① (생략)</p> <p>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</p>	<p>제12조(총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을 정한다.

③ ~ ⑤ (생략)

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.

-- 정하며, 회의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등을 재정리하고, 청년자율예산 편성 과정 및 절차 등을 관련 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계분석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